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4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7. 12. 26.(화) 14:3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이호성 위 원 장
허 욱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표철수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제4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4시 3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이효성 위원장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이효성 위원장

- 2017년 제4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지난 주 개최된 제47차 및 제48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장내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2017년도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에 관한 건 (2017-49-315)

○ 이효성 위원장

- <의결사항 가> ‘2017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가> 2017년 12월 31일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14개 사업자 147개 방송국에 대해 <붙임 1>과 같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하여 재허가 한다. 이 중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650점 미만으로 평가된 한국방송공사 등 4개사 14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부가된 재허가 조건의 이행을 전제로 “조건부 재허가”하기로 한다. <나> 허가유효기간은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재)극동방송 여수 FM방송국은 사업자 요청에 따라 재단의 기타 FM방송국 유효기간과 동시에 끝나도록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 12월 31일에 방송국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14개 사업자 147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심의·의결 하기 위함입니다. 재허가 신청 방송국 현황은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경과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심사위원회는 허 육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심사위원장으로 하고,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재허가심사위원회 구성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재허가심사위원회는 2017년 10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총 11일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심사위원회 평가 결과입니다.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제작·편성의 자율성, 종사자에 대한 부당 처우, 지역방송사의 지배구조 개선, 재난방송 현황, 외주 제작 개선 등을 중점 심사한 결과, EBS·지역민방(부산, 대전), 지역MBC(부산, 경남) 등 총 14개 방송사 133개 방송국은 재허가 기준에 부합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러나 650점 미만을 획득한 KBS·MBC·SBS·대전MBC 등 4개사 14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방통위에서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확인 후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판단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재허가 조건으로는 제작 자율성 제고를 위한 편성위원회 개선계획 마련, 징계 제도 개선, 독립 법인화, 전문

경영진 제도 유지, 고화질 DMB 도입, 외주 제도 개선 등을 건의하였고, 권고안으로는 시청자위원회 구성의 객관성 제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 재난방송 가이드라인 반영, 진행자·출연자 교체 시 사전 통지,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 편성 확대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정책 건의 사항으로 재허가 신청서 작성 내용 표준화, 신청내용 및 재허가 조건 미이행에 따른 재제수단 실효성 제고 등 재허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시청자위원회 구성의 객관성·공정성 강화,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대상 확대, 지상파DMB 광고 활성화, KBS·MBC 지역 방송국 콘텐츠 제작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상파방송국 재허가에 필요한 기술적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재허가 하되 무선국 혼신해소 등 일부 방송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허가 조건으로 부가할 필요가 있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방송 공정성 제고 등 추가제출 자료 주요 내용입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제시한 추가확인 필요 사항에 대해 KBS, MBC, SBS, 대전MBC 등 4개사는 다음과 같은 추가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KBS는 편성위원회 운영 촉진을 위한 세척개정, 직원 징계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 지역방송국 제작투자 확대, 감사원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조속한 제출 추진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MBC는 국장책임제, 공정방송협의회 효과적 운영, 재심 인사위원회에 외부 법률전문가 참여, 지역MBC 사장 선임 시 지역 구성원 의견 적극반영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SBS는 공적책무 강화를 위해 편성위원회·시청자위원회·본부장 중간평가제·임원 임명 동의제 등을 충실히 운영하고, 콘텐츠 투자를 확대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대전MBC는 인사규정 개정 검토, 매출액 일정부분 특집 제작비 투입, 장르별 제작비율 균등 배분 의무화, 중장기 외주제작비 증가 로드맵 작성 계획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방송법령에 따른 재허가심사위원회 심사결과와 전파법령에 따른 기술심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650점 이상 평가된 14개 방송사업자 133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재허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허가유효기간은 심사평가 점수가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인 한국교육방송공사 등 14개사 132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3년으로 하고, (재)극동방송 여수FM방송국은 사업자의 신청과 전파법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라 (재)극동방송의 타 FM방송국 유효기간과 동시에 끝나도록 2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재허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650점 미만으로 평가된 한국방송공사 등 4개사 14개 방송국에 대해 재허가심사위원회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방송사 대표자 의견청취, 추가자료 접수를 하였으며, 방송 공정성 제고, 제작종사자의 자유와 독립 강화, 종사자 징계 절차 개선, 방송프로그램 경쟁력 제고 등에 대한 해당 방송사의 의지와 구체적 이행 계획을 확인하였습니다. 4개사 전체적으로 일부 미흡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를 고려하고, 향후 재허가조건의 엄정한 이행을 전제로 “조건부 재허가” 하기로 하고, 허가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심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각 방송사업자별 또는 방송국별로 <붙임 1>과 같이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편성위원회 운영 활성화, 직원 징계제도 개선, 외주제작 거래 관행 개선, 시청자위원회 구성의 객관성 제고, 일자리 확대, 재난방송 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정책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재허가 제도 개선 방안 정책연구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여 향후 '15년 4월 29일에 의결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을 보완하고, 재허가 제도 개선을 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보고된 내용을 의결해 주시면 12월 말까지 재허가 방송국 허가증 교부를 완료하고, 2018년 1월부터 재허가

심사 결과 및 시청자 의견 반영여부 공표, '17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백서 발간,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점검, 재허가 제도 개선 정책연구 및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위원장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일정 등으로 해서 제가 심사 과정에 전부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심사위원들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충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14개 사업자 147개 방송국에 대한 심사결과,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바탕으로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하고 민주적 여론 형성에 기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적 책임 이행에 문제를 드러냈다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특히 공영방송사의 경우 공정성 논란, 제작·편성의 자율성 침해,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방송 파행과 시청자들의 심각한 비판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와 질 높은 방송콘텐츠 제작을 위한 내부 종사자의 자율성 확대 방안, 민영방송사의 소유 경영 분리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엄정한 심사 결과, KBS·MBC·SBS 지상파방송 3사와 대전MBC가 재허가 취소에 해당하는 평가점수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 방송사가 공적책임을 다하고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매체로 거듭나도록 요구받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들 또한 재허가 심사의 실효성 강화 등 몇 가지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한 예로 재허가신청서는 방송사업자가 재허가 기간 동안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구속적인 문서이고, 재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결정적 문서라는 점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행조건을 위반할 때는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재허가 심사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방송사업자들이 스스로 밝힌 여러 계획들을 반드시 실천하도록 유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재허가뿐만 아니라 향후 재승인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심결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 의견을 주시지요.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조건을 구체적인 것은 국장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셨는데 지금 조건에 붙어 있는 것,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건과 권고사항에 대해 몇 가지 강조점을 두거나 또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조건 중 공정성 실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대립된 사안을 다룰 경우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권고조항을 전체 147개 방송국에 다 붙였습니다. 물론 시사·보도를 하지 않는 라디오 방송사는 빠집니다. 보도·시사·교양 제작물을 다룰 때 반드시 이해관계나 사회적 쟁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공정성과 균형성을 갖추고 또 반대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가 당초에 조건

으로 붙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만 전체 위원님들 합의가 되지 못해서 결국 권고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방송프로그램을 보면 지나치게 한쪽 주장을 많이 신는 편향성을 띤 제작물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공영방송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방송이 다시 정상화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은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항상 보도와 시사·교양을 다룰 때는 그런 사회적 쟁점은 반드시 균형 있게 보도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의 편향된 시각으로 제작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무처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도·시사 프로그램의 권고조항 중에 보면 MBC에 붙은 조항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사측 또는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일방의 주장이 전달되지 않도록 할 것’ 이것도 역시 같은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이것을 권고사항으로 붙였으니까 반드시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합니다. 시사·교양·오락 등 다양한 방송 분야 상호간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할 것이라는 권고도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몽주의 시대에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방송에 주의주장을 내세워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판단을 강요하거나 또 끌고 가려 하는 그런 교만한 방송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아직 일각의 방송에서는 그런 방송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에게 판단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팩트 위주로 방송하도록 우리가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하나 MBC 권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전에 TBS에도 우리가 권고한 부분이 있는데 ‘방송 편성 관련 정부 정책을 준수할 것’이라는 권고가 나가 있습니다. 라디오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TBS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에서 많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TBS가 당초 교통방송 전문방송으로서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왜 보도를 하고 또 시사를 다루고, 심지어는 정치적인 논평이나 해설까지 하면서 일부 편향된 시각의 방송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일단 권고는 붙어 있습니다만 ‘정부정책을 준수할 것’이라는 것이 그런 취지입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TBS의 권고사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교통방송이나 종교방송 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방통위가 편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을 확정했을 경우에는 그 확정된 정책에 따라 달라는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서 TBS 같은 경우 당초 설립 목적에 맞게 교통 관련 정보 제공에 충실한 방송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방송정책입니다.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 지적처럼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직 안정화에 관한 권고사항이 MBC에 또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읽어 보면 ‘기존 인력과 신규 경력직, 파업 참가자와 비참가자 등 간의 갈등 해소와 조직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권고를 MBC에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MBC에서 새로운 사장이 취임하고 난 뒤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보면 과거 보직간부 보도국장했던 사람을 중계차에 태우고 있습니다. 자기 전문분야가 아닙니다. 과거 파업에 들어갔던 MBC 노조가 과거 부당인사 전보를 해서 아나운서가 스케

이트장 관리를 시켰다는 식으로 해서 부당한 인사조치를 받고 있다고 그것이 또 파업의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부당인사 전보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면 결코 MBC가 화합으로 에너지를 모아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파업에 참가했던 사람과 비참가했던 사람 간의 그 갈등은 끝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MBC 수뇌부는 이것을 유념하고 그렇게 '갈등을 해소하고 조직을 안정화시키는데 노력할 것' 이 권고에 이런 취지를 담은 것이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런 인사들이 계속되고 있고, 심지어는 현재 MBC 해외특파원 전원에 대해 2월 말까지 소환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칫 조직 안정화는커녕 점점 갈등이 더 벌어져서 과연 MBC가 어려운 지상파의 이런 여러 가지 도전을 극복하고 원만하게 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걱정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무처에서도 이런 부당전보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것이 발견되면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저희가 인사 하나하나에 대해 개입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권고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그 부분에서 촉구는 할 수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서 MBC가 이제 파업을 끝내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에서는 이번 재허가 권고사항에 들어가 있는 이 조항, 조직원 간 파업 참가자와 비참가자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조직 안정화에 노력할 것이라는 권고사항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하고 또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전체적으로 김석진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번 지상파 재허가 심사의 의미를 좀 더 강조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개월에 걸쳐 14개 사업자 147개 방송국에 대해 심사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심사위원장님을 맡아준 부위원장님께서 정기 국회 대응과 함께 심사위원장까지 수행하시느라고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역대 재허가 심사 결과나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부가한 것을 보더라도 이번 심사에 차별성이 나옵니다. 일단 앞에 점수가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KBS1·2TV, MBC 그리고 SBS, 대전 MBC 이런 주요 지상파 4개사의 14개 방송국의 경우에는 다 재허가 불허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물론 KBS 같은 경우 640점이 넘고 650점에 약간 못 미치는 점수가 나왔습니다. SBS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허가 불허가 가능한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이라는 특수성 그리고 지상파방송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을 부여해서 재허가하기로 입장을 어느 정도 모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결과를 받아봤을 때 사업자뿐만 아니라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지상파 3사가 모두 재허가 불허 점수, 재허가를 할 수 없는 낮은 점수를 받은 것에 대해 사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짧게는 지난 4년 동안 지상파 3사가 방송법이 부여한 공적책무·공공성·공정성 구현이라는 법적 책무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냉정한 평가라고 봅니다. 때문에 일부 사업자에 따라서는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몇 점 부족해서 650점을 못 받은 것에 대한 불만이지요. 그러나 심사결과를 검허하게 수용해서 지상파방송사업자로서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강화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충평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의 고민들이 지금 보고하는 과정에서 잘 나타나지 않았는데 제가 그동안 심사결과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몇 가지 점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10년 동안 비정상화된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재허가 조건 또는 권고사항으로 부가했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편성규약에 따른 편성위원회 운영, 그리고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라는 것들이 지금 가장 눈에 띄는 재허가 조건입니다. 또 앞서 김석진 위원님께서 MBC 같은 경우 새로운 경영진들이 들어서고 나서 여러 가지 인사상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셨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재허가 조건으로 부가하는 것이 부당한 해직이나 징계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 그리고 경영진들이 자의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들을 만듦으로써 소위 말하는 보복 이런 것들을 쉽게 하지 못하도록 조건들을 부가한 것이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민영방송, 특히 지역방송의 경우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제도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송 전문경영인의 독립적 경영을 보장하고 이를 위해 최다주주의 방송사 운영 및 인사 개입을 못하게 하는 조건을 부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적 사외이사 임명 이러한 것들도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조건으로 부가하지 않았습니 다만 SBS가 지난 10월 13일에 노사 합의했던 것들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노사 합의를 준수하도록 하는 권고사항을 부가했습니다. 이것은 조건은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부가했습니다만 방통위원들은 사장임명 동의제, 그리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와 같은 노사 합의사항들이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을 같이 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권고사항으로 부가가 됐습니다만 SBS 노사 합의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잘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MBC 경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고하라는 권고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역MBC 사장 선임 시 독립적인 경영과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운영상에 있어서 동일한 취지의 정신들이 반영되도록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지금까지 사장들의 친목 모임으로 전락한 시청자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가했습니다. 또한 시청자 권익 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도 부가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회적 논란이 됐던 외주제작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외주제작 제작비 산정, 저작권 수익배분 기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방통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에 맞도록 운영하라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영방송인 KBS와 EBS에 대해서는 외주제작 관행 개선에 앞장서라는 취지에서 재허가 1년 이내에 표준제작단가를 작성해서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재허가 조건이나 권고사항을 부가하는 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할 것이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허가 조건 이행을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또 앞서 심사과정에 나왔던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꼼꼼하게 준비해서 다음 재허가 때는 이 부족한 부분들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재허가 심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존경하는 김석진 위원님, 고삼석 위원님께서 디테일하게 언급을 하셔서, 또 앞에 심사위원장을 맡으셨던 부위원장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에 따라서 심사하는 점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자체는 문제라고 봅니다. 지난번 심사에서 722점을 받았던 KBS가 이번에 646점, 그때 문화방송은 710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16점, SBS 712점을 받았는데 이번에 647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문제입니다. 고쳐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심사에서 저는 심사가 엄격히 진행된 것은 잘된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허가·재허가, 승인·재승인 업무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자세로 엄격하게 해야만 우리가 정책적으로 추구하는 발전 방향에 맞게 여러 가지 방송사업자들이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에 따라서 점수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은 반드시 생각을 많이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엄격한 심사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 심사를 하고 난 이후에 위원들의 총평에서 보기에 따라서는 감정이 섞인 과도한 표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심사과정에서 자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논의과정에서 전부 다 수정되었습니다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요한 업무에 참여하는 심사위원들이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시지만 그런 점은 유념해서 하시면 좋겠다, 저는 그런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야기하지 못한 것이 있어서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번 재허가 때도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서, SBS의 사회 환원 문제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있었고, 또 그것을 받아서 방통위원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는 미처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SBS에 대해서 허가조건으로 매년 세전 이익의 15%를 공익재단에 출연하여 방송분야 등에 환원하고 이 결과를 매년 결산 완료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가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조건은 KBS·MBC만 있었던 1990년 SBS 최초 허가 시에 부가됐던 것입니다. 광고판매나 지상파의 매출들이 아주 좋을 때 부가되었던 조건이었습니다. 지금의 다채널 환경, 그리고 유료방송까지 등장한 조건 속에서 보면 이 조건이 현실적이나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타 방송사들과의 형평성 문제까지도 많은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이 번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고민했습니다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을 밝힙니다. 이것은 추후에 좀 더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방송분야 등 여러 분야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소액 다건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정작 사회환원을 하고 있는 SBS 쪽에서도 불만인 것이고, 또 효과 측면에서도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지원방안이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재허가 심사까지 이것을 이왕이면 사회환원하고 또 그러한 것들이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논의과정을 밝혀 두는 것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저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표철수 위원님께서 아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위원회마다 점수 등락폭이 심하냐?” 심지어는 올 3월과 11월에 종편·보도전문채널 재승인 심사 때와 점수를 비교할 때도 턱없이 낮은, 소위 메이저 방송사라고 부르는 주요 지상파방송 3사가 전원 다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심사결과를 받고 한때 굉장히 착잡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방송이라고 하는 지난 60년 동안 국민의 사랑을 받던 그런 메이저 주요 방송들이 고작 이렇게 낙제점밖에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추락을 했느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공영방송이 그동안 제 역할을 못 했기 때문에 아주 낙제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혹시나 이번 심사에 정치적 판단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지적들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마치 과거 정부와 한편이 되고 또 코드를 맞췄기 때문에 패짚죄가 걸렸다” 이런 일각의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KBS·MBC 사장을 교체하기 위해 엄청난 책임을 물어서 형편없는 점수를 받았다면 또 교체하기에 책임론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점수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물론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부위원장님 굉장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저는 그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심사위원장으로서는 일체 의견을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평가에도 점수를 줄 수 없습니다. 배점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 욱 부위원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이제 앞으로는 심사위원 구성에 좀 더 공정성과 균형감을 갖춘 분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장치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중인사가 들어왔다는, 그것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이 됐는지, 또 그 심사과정에 우리는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하지만 평가결과를 놓고 이런 정치적 판단이 너무 많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파업과 연동지어서 그렇게 MBC와 KBS에 또는 SBS까지 아주 야박한 점수를 줬다”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정치적인 잣대로 만약에 심사를 했다면 우리 방송들이 얼마나 정권에 코드를 맞추고 눈치 보기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것 방송 길들이기라는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말 균형 있게 공정하게 심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 정부에 편향된, 정부에 코드를 맞춰서 방송했다, 이제는 너희들 한번 혼 좀 나 봐라,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소신껏 방송할 수 있도록 또 방송의 독립, 언론의 자유가 지켜져 나갈 수 있도록 심사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어느 한편에 자꾸 편 가르기 하는 방송, 그런 식으로 심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번에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각의 지적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마침 아까 보고를 들어보니까 국장님께서 다음 재허가 여러 가지 심사의 기본계획을 짤 때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니 심사위원회 공정성이 어떻게 담보될 수 있는지,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정말 정성평가보다는 정량평가가 더 우선되고, 무슨 고깝게 패썹죄를 적용해서 점수를 주는 이런 일이 혹여 있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와 관련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심사위원회는 방통위원들이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서 심사위원들을 선정했습니다. 두 달 가까이 그분들이 하루 종일 심사하고도 2시간, 혹은 3시간의 심사비만 지급받으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사의 엄정성, 즉 방송통신위원회가 재허가 심사를 하는데 과연 이 제도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냐, 지상파방송사를 과연 재허가 취소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처음부터 논의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형식적인 절차라고 한다면 이 심사 제도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첫 질의조차 있었습니다. 그러한 입장 속에서 모두가 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를 추진하자고 결의하고 심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정치적 판단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식으로 비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심사에 참여하셨던 심사위원들이 지상파방송사가 담당해야 할 공적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부당노동행위가 없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외주제작 갑을구조를 극복하고 상생의 과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데, 어떤 방법이 마련되어야 하는지를 두고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SBS 문제조차도 어떻게 하면 과거의 조건을 벗어나서 사회환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문제까지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이 안 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채점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합산결과가 이렇게 나온 지를 본인들도 채점 당시에는 잘 모르는 구조이기 때문에, 하지만 각자 양심을 걸고 엄정하게 평가된 결과가 정치적 판단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비난받을 가능성 혹은 그렇게 비치는 것은 향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위원들을 위촉하고 공정한 심사를 해 나가는데 상당히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 저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재허가 심사 과정이 지상파방송이 거듭나고 국민의 사랑을 받기 위한 하나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결과치를 보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의외였었고 심사위원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서 지상파방송의 역할이 무엇이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리고 재허가 제도, 재승인 제도가 어떻게 보완되어야 할지에 관한 하나의 계기로 봐야 할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사실은 허 욱 부위원장님은 심사위원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직접 말씀하시기 부담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통상 다른 위원님들께서 의견 내시는 것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김석진 위원님 말씀은 단순히 위원의 한 분으로서 심사결과에 대해 의견을 내놓는다고보다도 실제로 방통위 업무의 가장 중요한 사업자 재허가 심사, 이것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는 표현을 많이 쓰셨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정치적 판단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정치적 잣대로 심사하지 않았느냐?’, ‘코드심사다’, ‘방송 길들이기로 비쳐질 수 있다’, ‘패썸죄가 작용한 것 아니냐’, 이것은 위원님 개인의 판단이라기보다도 우리 위원회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에 대해서 스스로 신뢰성을 훼손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심사는 지상파 방송 재허가 심사 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 기준은 예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심사위원회 추천은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현직만 나와 있습니다만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점수가 낮게 나온 것에 대해 웬만하면 저도 이 부분은 넘어가고 앞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려고 했습니다만 짧게는 지난 4년, 길게는 지난 10년 동안 과연 공영방송사들이 제 역할을 했느냐,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공영방송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많습니까, 아니면 제대로 역할을 못 했다는 평가들이 많습니까? 단연 후자입니다. ‘국경없는기자회’ 지수를 인용할 필요도 없이 지난 10년 동안 매년 연말에 나오는 평가 중 하나가 가장 중립적인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보수적으로 비쳐지는 한국언론학회 회원 대략 500명 내외가 평가에 참여하는 미디어어워드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는 3가지 잣대로 언론사들을 평가합니다. 공정성·유용성·신뢰성, 그런데 최근의 결과를 보면 지상파방송사들이 아예 순위에서 사라졌습니다. 트렌드로 쪽 나옵니다. 10년 전에는 지상파들이 대부분 공정성 분야나 유용성 분야, 신뢰성 분야에 상위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3~4년 동안은 이 순위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제가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가장 공정하게 심사해 주는 언론전문가들인 언론학회 회원들이 평가해서 아주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러한 평가와 이번 방통위 지상파 재허가심사위원회 평가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물론 낮은 점수가 나와서 충격도 받았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유감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앞서 제가 총평에서 말씀드렸듯이 심사결과

심사결과대로 검허하게 수용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면서 공영방송 지상파방송에 부여한 공적책무·공공성·공정성 구현을 위해 어떻게 하면 제대로 구현할 것인가를 고민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번 재허가 심사에 의미가 있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아까 그 이야기만 하고 말려고 했는데 다른 분들 또 따로 말씀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방송 2사를 포함해서 주요 지상파 3사가 650점 아래 점수를 받았다. 이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상파, 특히 공영방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충분한 책임을 묻는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부여된 조건들이 조건으로는 너무 약한 것입니다. 지상파 3사가 낙제점수를 받았는데 조건이 이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부여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 논의과정에서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런 점수가 나오면 앞으로는 훨씬 더 강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은 방통위가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점수가 나오지 않도록 되어야지요.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이번 재허가 과정에서 허 옥 부위원장님과 또 심사위원들, 해당 부서에서 수고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유례없이 지상파방송의 점수가 형편없이 나온 것은 심사위원들에게 심사를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묻기 전에 방송사들이 자성해야 할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상파방송사들이 엄연히 여러 가지 많은 비판과 비난을 들어왔고 실제 세계적으로, 국내에서도 그 평가가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 것이 심사에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과 권고사항이 붙었는데 이런 것들은 방송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방송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사위원들께서 정책건의한 것을 보면 재허가신청서 작성 내용의 표준화, 신청 내용 및 재허가 조건 미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 또 재허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항이 있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행조건 미이행 시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도 우리가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방송평가위원회가 방송평가 400점을 주는데 이것이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재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심사평가 항목 및 배점에 대해 보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허가 심사가 그동안 부족한 부분을 부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건을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방송사가 잘한 부분에 대한 평가가 인색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방송사가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과하는 방안을 찾아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도제작 종사자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잘 보장되어서 국민의 신뢰가 높은 방송을 만들어 내는 경우, 방송 공정성과 공적책무 수행과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노사합의를 이루어 낸 경우, 매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신기술 투자를 적극적으로 한 경우, 정부나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의 수상을 한 경우, 또 외주제작사와 상생협력을 선도적으로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에 대해 사무처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관한 건 (2017-49-316)

○ 이효성 위원장

- <의결사항 나>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십시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현대카드(주), 비씨카드(주), 롯데카드(주), 신한카드(주), 삼성카드(주), (주)케이비국민카드, 하나카드(주) 총 7개 신용카드사업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고, 아래의 지정조건을 부과한다”입니다. 지정 조건은 <1> 귀 기관은 본인확인업무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붙임 4>의 보완 사항을 지정의결 결과를 통보받는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개선하여 이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행결과를 확인하여 개선이 완료된 경우 지정서를 교부하며, 지정서를 교부하고 받은 기관은 그 시점부터 본인확인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귀 기관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 제23조의4,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 제9조의5, 제15조 및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등을 포함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귀 기관은 본인확인기관 지정 후에도 본인확인업무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매년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결과 도출된 보완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4> 방송통신위원회는 귀 기관이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를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제47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는 지정 조건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제안 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현재 11개 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또는 지정 의제되어 아이핀, 휴대폰, 공인인증서 방식으로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제공하고 있으나, 휴대폰 인증 위주의 시장을 개선하고, 본인명의 휴대폰 이용이 어려운 경우의 불편 해소 등 이용자의 편의성 및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활용한 새로운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를 활용한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이 가능하도록 신용카드사업자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주요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신규 주민번호 대체수단 시범서비스 사업자 선정 방안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9월부터 9월 29일까지 신용카드사업자 시범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10월 시범서비스 결과 통보 및 지정신청을 안내하였고 10월 11일부터 18일까지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서를 접수하여 시범서비스를 완료한 현대카드(주) 등 총 7개 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10월 12일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서류 심사 및 사업자당 5일간의 현장실사를 거쳤습니다. 약 7주간 소요되었습니다. 12월 18일에는 심사 지적 사항 관련 사업자 의견청취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심사기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3조3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 및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등에 따른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기술적 능력, 재정적 능력, 설비

규모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심사기준 충족여부를 서면 확인 및 현장 실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기준 4개 분야, 17개 심사기준, 92개 세부평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은 신청 사업자별로 법제, 기술, 회계 분야 7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지정신청 기관이 다수여서 전체 심사일정 기간이 장기간임을 고려하여 30명 이내의 위원풀을 구성하고 신청기관당 7인을 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대카드(주) 등 총 7개 신용 카드사업자는 본인확인기관 지정 기준을 대체로 충족하고 있으나 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아래와 같이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와 설비 규모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일부 사항을 보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보완 사항은 <붙임 4>에 상세하게 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완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3가지입니다. 본인확인서비스 업무수탁기관 운영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긴급 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본인확인 서비스 업무수탁기관에 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 본인확인서비스의 부정인증 시도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 되겠습니다. 현대카드(주)에 대해서는 서버 접근 통제 시스템 등에 대한 기술적 보안통제 미흡 사항 등을 개선하도록 하고, 비씨카드(주)에 대해서는 개발환경에 대한 보안 대책 등 일부 보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롯데카드(주)에 대해서는 일상감사시스템 등 주요정보보호 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강화하고 일부 보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신한카드(주)에 대해서는 서버접근통제시스템의 로그 위·변조 방지 대책 마련 등 일부 보완하고자 합니다. 삼성카드(주)는 개발 환경에 대한 보안대책을 마련하는 등 일부 보완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주)케이비국민카드에 대해서는 일부 망에서 유입되는 네트워크 트래픽 침입탐지 및 차단 대책과 비인가 단말기에 대한 접속차단 방안 마련 등 일부 보완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하나카드(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파기절차 개선, 개인정보가 포함된 출력물 보호조치 강화 등 일부 보완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대 카드(주) 등 총 7개 사업자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이 일부 미흡하지만 지적 사항에 대하여 기 개선하였거나 단기간 내 개선 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붙임 4>의 보완사항 이행을 조건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정요건 이행 여부 확인 후 지정서를 교부 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위원회에서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대해서 의결해 주시면 결과를 통보하고 이행 결과 제출을 2018년 3월 26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조건 이행 결과 점검은 4월 초까지 하고, 지정서 교부를 1월부터 4월까지 교부하고 관보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조건 이행이 완료된 사업자부터 순차적으로 지정서를 교부하고자 합니다. 본인확인기관 정기 점검은 내년도 하반기에 실시하여 보완사항이 나오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사항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쳤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위원님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여기 보완 필요사항에도 있습니다만 모든 사업자들이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 계획' 중 심사기준 세 번째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운영·보안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전부 다 보완 필요로 지적됐지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모든 사업자가 다 지적되었지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공통적으로 어떻게 어떤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다 보완 지적을 받은 것입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7개 신용카드사가 본인확인기관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신용카드사들이 굉장히 수많은 웹사이트사들을 회원사로 해서 서비스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웹사이트를 연결하기 위해 중간에 중개업무를 하는 사업자가 있는데 거기에 위탁하게 되는데 그 사업자 위탁업무와 관련해서 일부 기술적인 미흡사항들이 발견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것은 기본적으로 보안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정보보호 침해에 취약할 수 있는 것들이 지적되었다고 봐야 하는 것이지요?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핵심적인 것입니다. 본인확인 같은 경우 보안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실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향후 계획을 보면 대략 내년도 1/4분기까지는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빈틈없이 아주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받을 때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인데 2페이지 지정 조건 박스 네 번째 마지막 줄을 보면 '정보통신망법 제47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권고가 우선입니까, 조건이 우선입니까? 마지막 <4>번은 '권고한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지정 조건이긴 하지만 권고로 붙인 내용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면 지정 조건이 아니라 따로 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조건과 권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만약에 이것이 필요하다면 '인증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가 아니고 '인증을 받을 것'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별도의 권고라면, 여기 지정 조건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물론 포괄적으로 보면 다 조건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앞에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서 재허가할 때도 조건과 권고는 분명히 분리하기 때문에 그것의 경중을 따져서 여기 지정 조건에 포함시킨다면 '권고'를 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판단해보십시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7개 카드사 모두 본인확인서비스 업무수탁기관에 관한 관리·감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업무수탁기관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어떤 시스템 문제입니까?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특정사업자를 여기에서 밝혀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현재 신용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현재 또 본인확인업무를 하고 있는 곳에서 중개업무를 할 예정입니다. 본인확인 수탁하는 내용은 카드사가 각종 회원인 웹사이트를 연결하기 위한 모듈을 개발해 주고, 주로 연결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연결업무와 관련되는 시스템에 있어서 일부 약간 보안이 강화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적한 사항들입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그쪽에서 아이핀 이용 본인확인기관도 동시에 수탁하고 있는 그쪽입니까?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결국은 업무수탁 기관이 본인확인 업무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자칫 소홀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으니 그런 점들을 잘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기관은 다 금융위 소관이지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카드사업자가 그렇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카드사업자들이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 허 욱 부위원장

- 그래서 금융위와 협조체계도 구축해서 내년 하반기에 점검한다는데 제대로 점검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또 다른 분 의견 주시지요.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외국에서도 이렇게 본인확인기관으로 카드사를 지정합니까?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한국이 본인확인 시장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많지는 않은데 만들려고 하는 곳들이 있고, 최근에 KISA와 영국 출장을 가서 일부 확인해 봤는데 영국의 경우에는 7개 기관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은행, 보험사 등등 몇 가지 기관들을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제일 우려되는 것이 본인임을 위장하고 위조·변조로 해서 여러 사기범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통조건에 '부정인증 시도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 방안을 강화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 어느 수준까지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합니까?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카드사들이 다 금융업무를 해 왔기 때문에 부정방지 시스템들은 가지고 있는데 본인확인시스템과 관련해서 업무수탁기관과 연결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술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긴 한데 인증수탁기관이 본인확인 카드사에게 직접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을 전달할 때 그 요구사항들에 대해 컨트롤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도 좀 더 강화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심사위원들이 판단한 바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 부분이 제대로 보완되어야만 우리가 지정해 줄 텐데, 그렇지 않으면 위조·변조 사고를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비용도 많이 들어갈 텐데 예를 들어 카드사가 고액의 비용부담을 떠안고 굳이 이것을 해야겠다고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자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기본적으로 지금 신청한 사업자들이 이 서비스를 위해 10억원 내외의 비용투자를 했고, 굉장히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카드사가 이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가장 큰 장점은 무엇입니까?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가장 큰 장점은 카드사가 현재 본인확인기관의 회원사로 본인확인업무 서비스를 이용할 때 마다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직접 본인확인기관이 됐을 때 그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휴대폰 위주의 시장에서 신용카드가 지금 현재 모바일 결제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기술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하면 그 서비스로 인한 수익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고, 기존 여러 가지 카드결제서비스와 함께 시너지효과가 일어나는 측면도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사업자들이 10억 내외의 비용부담을 하더라도 결국 다른데 지출되는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아마 빨리 할 것입니다. 또 경쟁적으로 가장 먼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됐다, 이것도 사세와 관련 있으니까 자칫 과열경쟁으로 이런 보안시스템을 허술하게 해서 다 됐다고 신청해서 ‘검증해 다오’ 했을 때 우리가 잘 점검을 꼼꼼하게 못 하면 또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말 면밀하게 꼼꼼하게 잘 점검해서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업무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준비가 되는 대로 하나하나 지정해 준다는 것이지요?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일부러 저희가 지정을 하고 몇 개월 이내에 조건을 이행하라고 하지 않고, 안을 올린 방향을 다 완료했으면 지정서를 확인해서 교부하는 형태로 그렇게 일부러 안을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정 의결해 주시면 사업자들이 이행결과를 제출하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현장 다 나가서 점검을 해서, 여기 보완사항들을 보시면 개수가 큰 카테고리로 되어 있지만 세부 심사기준은 92개 통제 항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항들이 있고, 그 중 일부 지적된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체크를 했고 또 다시 그렇게 조건에 대해서 이행을 완료하면 그 부분들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정서를 교부할 예정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지정을 너무 서두르지 말고 끝까지 꼼꼼하게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수탁기관에 대한 보완조치가 상당히 완벽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정서가 교부되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그런 쪽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생긴다면 주 귀책사유가 어디입니까? 카드사입니까, 수탁기관으로 봅니다?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기본적으로는 카드사가 본인확인기관이기 때문에 카드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그것에 대한 것을 충분히 노티스 시키고, 카드사 자체가 수탁기관에 대해서 그와 같은 의무를 확실하게 주입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시지요? 이것은 새로운 개인정보 활용서비스에 관한 것인데 사업자 허가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사후 감독을 철저하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 마련에 관한 건

○ 이효성 위원장

- 끝으로 <보고사항 가>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 마련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보고해 주십시오.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국회 및 장애인단체는 장애인방송에 대한 주시청시간대 편성, 재방송 지연 등의 품질 개선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방송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장애인방송 의무편성 목표치는 제시하고 있으나, 품질 개선을 위한 제작방법, 준수사항 등의 기준이 없어 이번에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과입니다. '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장애인방송 질적 수준 제고 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에 장애인방송 연구반을 시작해서 현재 까지 총 6회 연구반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에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고, 12월 19일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세 번째, 해외사례입니다.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장애인방송 프로그램의 의무편성 목표는 법률로 정하고,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정·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국의 경우 법률에서 방송사업자의 방송접근서비스 제공의무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오프콤(Ofcom)의 'TV접근서비스규칙'으로 제정해서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TV접근서비스규칙'은 의무편성 목표치 설정, 주시청시간대 편성 권장, 과도한 재방송 지양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법률에서 방송사업자의 방송접근 서비스 제공의무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FCC가 '미국연방규정집'으로 제정하여 강제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연방규정집'은 의무 편성 목표치 설정, 주시청시간대 편성 의무화, 재방송의 편성비율 제외, 방송사업자의 이행 점검 등을 규정하고 있고,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과징금 부과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본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안)은 영국, 미국 등의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장애인방송 고시의 의무사항을 재확인하는 한편, 제작기준을 설정하여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토록 독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장애인방송 제공에 관한 기본 준수사항입니다. 편성 관련해서 주시청시간대 편성을 권장하고, 화면해설의 과도한 재방송을 지양하고, 보도프로그램은 화면해설 편성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화면해설방송이 재방송으로 의무편성 비율을 달성하거나 화면해설 필요성이 적은 뉴스 프로그램으로 화면해설을 편성하는 편법적인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형표시 관련해서는 장애인방송으로 제작되었음을 전자프로그램 편성정보로 제공을 권장하고, 방송프로그램 시작 시점에 방송을 통한 문자 또는 음성으로 장애인방송임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연속성이 있는 프로그램의 화면해설 방송을 성실히 제공해야 합니다. 시리즈 방송물을 장애인방송으로 제공할 경우, 시리즈 내의 모든 방송물이 빠짐없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종회까지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장애인방송 유형별 제작 지침입니다. 폐쇄자막방송 관련해서 자막 속기사의 최소 자격, 자막 표기의 방법, 화자의 구분 방법, 자막의 배치와 속도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자격의 경우에는 대한상공회의소장이 발행한 한글속기 국가기술자격 1~2급 보유, 자막방송 전문교육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여야 합니다. 정확도의 경우에는 입력오류는 2% 이내, 화자가 누군지 명확히 표시하고, 자막은 중요한 시각적 정보를 가리지 않는 위치에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 등입니다. 화면해설방송에 대해서는 화면해설방송작가의 최소 자격, 화면해설의 기준, 화면해설의 삽입 지점, 낭독 방법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자격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깊고,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실시하는 화면해설방송작가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정확도의 경우에는 화면해설이 필요한 요소와 불필요한 요소, 중립적 관점인 3인칭 해설 권장, 감정 개입이 없는 객관성 유지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어방송에 대해서는 한국

수어통역사의 최소 자격 제시, 수어통역의 정확성 제고, 선거, 재난방송 등에 수어방송 제공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어통역사는 국가공인 한국수어 통역 자격을 보유하고, 한국수어 통역 전문교육을 이수하여 모국어 능력 수준의 한국수어를 사용할 역량을 갖춘 자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수어화면은 국민적 관심이 예상되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화면크기 기준 현행 1/16에서 1/8까지 확대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기타 재난방송 관련해서는 재난방송 편성 시 취약계층이 긴급 상황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각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규칙을 준수하도록 권장하였습니다. 이용방법 관련해서는 장애인방송 이용자를 위한 이용방법을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고지하도록 하였고, 이용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시청자의 의견신청은 전화, 팩스, 이메일, 오디오 녹음, 점자법 등을 이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넷째, 장애인방송 이용자 범위 확대를 위해서 장애인방송의 대상자를 시·청각 장애인에서 어린이·노인·외국인 등 향후 텔레비전시청에 장애가 있을 수 있는 전 국민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금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방송사업자에게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기본적인 준수사항을 제시함으로써 그동안 장애인단체, 국회 등에서 요구해 온 방송장애인 품질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향후 텔레비전 시청에 장애가 있을 수 있는 모든 시청자들에게 동등한 방송프로그램 접근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각 방송사 제작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년 하반기에는 본 가이드라인 내용 중 필요한 사항은 고시에 담는 방향으로 장애인방송 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은 장애인의 시청권,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해 애써 주신 권현영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장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찮으시다면 현장에서 느끼는 소회에 대해 자리에 모셔서 한 말씀 들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현영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장 입장)

추운 날씨에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장애인방송과 관련한 정책적 제언에 대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현영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장

-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과 상임위원님들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있는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장애인방송 시청보장 정책은 2011년에 고시를 마련하고 2012년 1월부터 시행해서 지금 6년째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송사들이 많이 협조해 주고, 또 관련 있는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상당한 수준으로 6년 동안에 선진국 수준으로 많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 분량이나 편성의 의무, 이 부분은 확보하고 있지만 질적으로 실제로 시청각 장애인들이 방송을 향유하는 부분에까지는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했는데, 그 이유가 제대로 된 장애인방송을 제작해서 또

중요한 시간대에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시간대에 제공하는 것이 제일 본질적인 목표인데 그런 품질 제고를 위한 방법이 지금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이것을 담당하는 편성업무 하는 쪽과 제작하는 쪽을 방송사의 일부 부서에서 이것을 담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막 드라이브를 걸면 잘 따라오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저희 언론법학회에서 해외를 다니면서 연구를 다 해서 우리나라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이 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 안을 가지고 다 완성시키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이것만 보고 운용해도 품질이 나아질 수 있는 형태로 6년 동안 해 온 것을 질적 전환의 시기로 바꾸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 허 욱 부위원장

- 장애인단체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지적된 것은 어떤 점이 있었습니까?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국정감사에서 많이 나오는 지적사항이 양적인 측면에서 질적으로 전환해서 품질이 좋은 장애인 방송이 제공되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국회 지적과 같은 맥락으로 이 번 안건이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플랫폼 확장에서 이제는 품질 제고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이 맞지요?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기존의 방송법에도 의무방송사업자도 있고 또 고시도 있지 않습니까?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예.

○ 허 욱 부위원장

- 이것이 가이드라인으로 된 것은 향후 고시로 다시 전환될 측면들이 있는 것입니까?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이 중에서 저희가 내년에 운영해 보고 중요한 내용이고 무리가 없으면 장애인방송 고시로 격상해서 강제적인 규정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안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꼭 고시로 승격시켜서 법적인 의무감을 부여해야겠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 권현영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장

- 오늘 김동철 국장께서 잘 보고해 주신 바처럼 위에 있는 편성내용과 그다음에 품질에 대해 편성의무와 유형표시 성실 제공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형식적으로 몇 시간을 내야겠다고 하는데 뉴스 앞부분 5분만 하고 뒷부분은 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전체 시리즈 한두 편 하고 뒷부분은 나오지 않으면 상당히 곤란한, 품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내용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바꾸는 내용과 자격과 내용, 품질이 시장에서 우리가 제작비를 지원하고 제작시장이 돌아가면 그것이 어떤 분들이 참여하느냐에 따라 품질이 상당히 달라지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체계화해서 일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 방송사업자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부분들은 의무화하고, 어떤 의무화 사항은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고, 더 추가적으로 해야 할 내용들을 잘 해설하는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 전체를 보고 일하면 되도록 하되, 그중 일부는 의무화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더 발전적인 분야로 협력해서 고시의 성격과 가이드라인 성격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미국은 강제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권현영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서 안 되면 FCC에서 제재를 하는데 결국 비용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방송사들이 그 비용 문제 때문에 꺼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그 비용을 지금은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포션이 있지요?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저희가 매칭방식으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런 부분에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현영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장

- 이것은 전반적으로 장애인정책, 복지정책 전반과 연동되는데 선진국은 사회적 합의가 수준이 이미 매우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뿐만이 아니고 방송소외계층, 다양한 접근권을

중심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특별히 시청각장애인에 대해 특별보호를 해야겠다는 법적 수준이 다른 차원이지요. 그래서 선진국은 제작비 지원하는 것은 거의 없는 상태이고, 의무화하면 당연히 사업자들이 해야 하는 내용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원을 통해 방송사들의 정책을 전환시키고 그것이 무르익으면 의무비율을 높여 가는 형식으로 발전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나라의 모델을 선진국에서도 더 부러워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이드라인 본문 5페이지를 보면 지상파 채널과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보도프로그램, 뉴스 이용은 화면해설 편성에서 제외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저희가 이번에 가이드라인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은 뉴스는 보통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쉬는 시간이 별로 없이 앵커나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이어져서 화면해설을 넣을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1시간짜리 뉴스라고 해도 2분 정도 화면해설을 집어넣고 의무 목표를 채웠다고 해서 시간을 때우는 식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그렇게 집어넣은 것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악용도 되지만 제가 과거에 직접 연구를 해 본 경험으로 보면 특히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은 TV를 통해 오락 제공 기능, 그것을 가장 크게 느끼고 그와 유사하게 정보취득 욕구를 상당히 크게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악용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보도전문채널 아니고는 지상파나 종편의 뉴스를 통해서도 화면해설방송을 제공받지 못하는 그러한 불합리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추후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실 것을 의견으로 드립니다.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예, 알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리고 향후 장애인방송 이용자 범위를 확대한다, 이것은 시각·청각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 외에 어린이나 노인, 외국인 등 이런 분들에 대해 당연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송약자를 지칭하는 것이지요. 장기적으로 이런 분들에 대해서까지 만약 확대가 된다면 실제로 시각·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보다는 어린이, 노인, 외국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이것은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이 아닌 것입니다. ‘방송약자’ 내지는 ‘방송취약계층에 대한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오히려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단순히 시각과 청각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방송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약자들인 많은 분들에 대해 혜택을 드리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런 것들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알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위원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실 것 같습니다.

○ 권현영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장

-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나라 수어방송이나 화면해설 방송의 수준이 미국이나 영국 등 기타 선진국에 비해 손색이 있다면 무엇이 손색이 있습니까?

○ 권현영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장

- 지금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영국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고 평가하는데 영국 분들이 한국의 사례를 지난 5년 동안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매우 궁금해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의무화가 상당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나라이고, 그래서 품질이나 수준을 보면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3개 나라, 우리나라는 따라가는 입장이지만 금방 세계적인 수준을 선도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이 분야 전문가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스마트수어방송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선도하는 것 아닙니까?

○ 권현영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장

-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뛰어 나고 우리가 또 방송기술환경이 상당히 좋은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수상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보조장치들인 단말기들이 발전하면 방송소비환경에서 더 적합한 형태의 선도적인 모델을 발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우리가 취약계층 그리고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방송접근권,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여러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안하신 여러 부분에 대해 사무처에서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정책 입안을 통해 장애인방송의 활성화에 의미 있는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살펴 가시기 바랍니다.

(권현영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장 퇴장)

그동안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해 노력해 주신 장애인방송시청 보장위원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제정된 가이드라인이 앞으로 국내 장애인방송의 품질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장애인방송의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퇴장하셨습니다만 연말 바쁜 일정에도 방송통신위원회 보고를 위해 회의에 참석하여 고견을 말씀해 주신 권현영 장애인방송시청 보장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관계자 모두가 장애인방송 발전을 위해 더욱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연말연시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이효성 위원장

- 이상으로 2017년도 제4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 16시 05분 폐회 】